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2701 |
|------|------|

2025.6.19.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1일, 김현기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6.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기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사·공단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하고자 발의됨.

####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sup>1)</sup>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sup>2)</sup>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도매시장 관리 등의 고유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sup>3)</sup>와 서울시가 함께 행사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고유사무 외에 경영평가·인사·예산 및 결산 등 공사 운영을 위한 일반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사무는 민생노동국(농수산물유통과)가, 기관운영을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양곡시장

3)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농축산물은 농식품부가, 해산물은 해수부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위한 일반사항은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음4).

### 3.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농수산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현행 조례                                    | 개정조례안                                                                                           |
|------------------------------------------|-------------------------------------------------------------------------------------------------|
| 제25조(감독 등)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25조(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u>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

- 먼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 법 제51조는 지방공사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 법 제56조에서 지방공사가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공고, 자본금, 사채 발행 등을 기재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음.
- 그리고 동 법 제65조제3항은 지방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동 법 제66조의2제2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예·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75조의2에서는 공사 사장이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

4) 이 중 기획조정실은 농수산공사 뿐만아니라 서울시 소속 6개 공기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임원 인사 및 조직 관리, 예산·결산·이사회·공사채 발행 관리, 노동이사제 및 임금피크제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평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의 경영·인사·재무와 관련된 주요 소송은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더욱이 동 법 제7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사의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공사 사장의 사전 협의 대상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도·감독 주체를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할 경우 개별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기획조정실인지, 아니면 개별 기관에 대한 주무부서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주무부서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5.6.3.~ 6.7.) 중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등은 동 개정조례안이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장에서 주무부서장으로 이전하고, 기관장은 예산, 인사, 소송 등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해 주무부서장의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여,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며, 행정적 과잉 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sup>5)</sup>[참고자료].
- 그러나 주무부서장은 독립적인 권한이나 법적 주체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명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주무부서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권한의 귀속 자체를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사 협의회의 주장은

---

5)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시 소속 6개 공기업의 설립 근거 조례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노동이사 협의회는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를 ‘사전검열’ 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보다 강한 개념인 인가를 얻도록 하였고, 동 개정 조례안의 소송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소송 수행의 가부에 대한 협의보다는 소송 현황에 대한 보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70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1일  
발 의 자: 김현기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용호, 김인제,  
김종길, 문성호, 옥재은,  
윤종복, 이민석, 이종환,  
이효원, 황유정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  
식품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  
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  
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감독 등) ①·② (생   략)<br><br><u>&lt;신   설&gt;</u> | 제25조(감독 등) ①·② (현행과<br>같음)<br><br><u>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br/>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br/>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br/>협의하여야 한다.</u>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5조 (감독 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할 때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는 **절차적 사안**<sup>1)</sup>이므로 별도의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재정수반 직접적 요인 부재] 절차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수반 요인 없음